

조부모에 의한 비공식 자녀돌봄 및 지원이 기혼여성의 추가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 패널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The effect of informal grandparent-provided child care and support
on married women's additional birth plans: A panel data analysis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강 사 한 영 선*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 수 이 연 숙**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

Lecturer Han, Young-Su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

Professor Lee, Yon-Suk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informal grandparent-provided child care and support on married women's additional birth plans. This study applied panel data analysis to three waves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 (KLoWF) and obtained two major findings, as follows.

First, having a mother-in-law and co-residing with parents-in-law had a positive influence on married working women's additional birth plans. Child care provision

* 주저자 : 한영선(youngsun3@korea.ac.kr)

** 교신저자 : 이연숙(yonsuk@korea.ac.kr)

from the parents of a married working woman also positively influenced her additional birth plans.

Second, the analysis showed that housework assistance from a woman's mother-in-law or mother had no effect on her birth plans in both models investigated: the additional birth plan model for all women, both employed and unemployed, and the additional birth plan model for only working women.

In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child care availability, with grandparents as the trusted providers, is a more important factor in married women's additional birth plans than housework assistance from their mothers-in-law and mothers.

Key Words : 조부모 자녀돌봄 (grandparent-provided child care), 기혼여성의 추가 출산계획 (married women's additional birth plans), 패널자료 분석 (panel data analysis)

I. 서론

OECD(2011) 통계에 의하면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대 2.76, 1980년대 2.18, 1990년대 1.91, 2000년대 1.68로 꾸준히 하락하였고, 2011년에는 1.70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였다.

일찍이 1960년대 이후 저출산 현상이 나타난 서구사회에서는 출산율 회복을 위해 명시적(explicit) 가족정책을 추진하여 근로자들을 위한 자녀 출산·양육기 부모휴가 제공, 공보육을 포함한 이용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보육서비스 확대, 그리고 가족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의 현금 급여 제공 등 여러가지 형태의 가족지원책을 마련하여 신사회위험(new social risk)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이진숙 · 신지연 · 윤나리, 2010). 이러한 가족지원책들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따른 부모들의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여 부모들의 출산수요 증가를 유도하고, 여성들의 부모권과 노동권을 함께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성장 발전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홍승아 외, 2008).

우리나라에서도 서구 국가들에서 나타났던 저

출산 현상이 나타났는데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1980년대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이하로 하락한 이후 1990년 1.57, 2000년 1.467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0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076을 기록하면서 출산쇼크를 경험하였다. 이후 출산율이 완전히 상승하면서 2013년 합계출산율은 1.19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통계청, 출생통계 각 년도).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드는 자녀양육, 자녀교육 비용문제가 제기되고, 취업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환경 등에 의해 저출산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취업여성들이 출산 후 노동시장 참여를 지속하고자 할 때 밍고 밍길 수 있는 이용가능한 보육기관의 부족 문제는 일하는 여성들이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을 함께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한영선, 2013).

OECD(2009) 통계에 의하면 3-5세 아동의 보육기관 등록률은 우리나라가 40.4%로 나타나 스웨덴 92.1%, 노르웨이 95.6%, 미국 55.3%, 네덜란드 67.2%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

이러한 통계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기관 수 부족에 의한 것으로 공보육 중심의 보육인프라가 발달된 노르딕 국가의 경우 3-5세 아동의 보육기관 이용률이 높아 우리나라와 대조를 이루었다. 낮은 수준의 공식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가족 등에 의한 비공식 자녀돌봄의 이용률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비공식 자녀돌봄 이용률은 23.6%로 나타나 프랑스 19.6%, 스웨덴 0.5%, 덴마크 0.1% 등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OECD, 2008).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자녀돌봄을 위한 가족, 친지 등의 인적 네트워크는 취업여성들이 부족한 보육서비스를 대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베커는 「가족에서의 이타주의 이론(Altruism in the family)」을 통해 “가계예산 제약하에서 이타적 부모(altruist)는 이기적 가족원이자 수혜자(selfish beneficiary)인 성인자녀에 대한 자원의 이전, 즉 가족원들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 이타적 부모의 효용(utility)은 정적영향을 받게 됨”을 주장하면서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손자녀돌봄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을 설명하였다(Becker, 1993: 278-286).

유자녀 부모들이 이용가능한 보육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노르딕 국가의 경우 “조부모에 의한 자녀돌봄은 부모 및 공보육을 주로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용되고 있는 반면 공보육을 포함한 민간보육 서비스 제공 정도가 낮은 남부 유럽 국가의 경우 부모보육을 대체하는 측면에서 조부모에 의한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된다(OECD, 2011: 145). 앞서 제시한 OECD 보육통계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남유럽과 마찬가지로 보육서비스 공급이 보육수요에 비해 부족하다. 따라서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돌봄 지원은 부모들의 자녀돌봄 시간을 대체하게 되어 특히 취업여성들의 자녀돌봄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기존자

녀에 대한 비공식 돌봄의 이용가능성은 자녀돌봄에 대한 부담경감으로 이어지고 결국 추가 자녀 출산이나 출산계획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부모들의 손자녀 돌봄은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1세대들에게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심리적 복지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일부 연구들에서 보고된다(강유진, 2011; 김은정, 2011). 손자녀 돌봄의 조부모들에 대한 부정적영향을 보고한 연구와 함께 다른 한편에서는 조부모들에 의한 아동돌봄이 3세대들에게 심리적 안정이나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는 등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조부모들에게 은퇴 후 직업적 역할 지위를 상실한 이후 새로운 역할의 획득, 양육의 즐거움 등으로 이어져 조부모의 삶에 정적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된다(최영·차승연, 2013; Bowers & Myers, 1999; Burton, 1992). 조부모의 돌봄지원이 단순히 대체가능한 돌봄노동의 의미를 넘는 포괄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및 지원이 성인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 출산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이 있다.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지원과 출산간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시어머니, 친정어머니의 생존여부나 시댁 또는 친정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 출산 또는 출산계획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와 2세대 성인 기혼자녀의 동거, 친정어머니의 생존여부 그리고 성인자녀를 대신한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 돌봄은 성인자녀의 출산이나 출산계획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정석, 2007; 정은희·최유석, 2013).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들은 부모와 성인자녀가 동거하는지, 이러한 동거가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이나 가사노동을 조력으로 이어지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석

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가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가변수(time-varying)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조사 1-3차 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panel data analysis)을 통해 조부모에 의한 비공식 자녀돌봄 및 지원이 기혼여성들의 추가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조부모가 수행하는 손자녀 돌봄 및 지원에 의해 여성들이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추가출산 가능성을 높게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고령인력 활용 및 여성들에 대한 생애주기별 복지제공 관련 정부의 정책수립에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조부모에 의한 비공식 자녀돌봄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조부모의 생존, 특히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의 생존과 같은 ‘모(母)’의 존재가 성인자녀의 출산이나 출산 계획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현식·김지연, 2012; 정은희·최유석, 2013; 정혜은·진미정, 2008).

이는 젠더에 따른 남녀간 노동분담이 잔존해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가정내 어린 손자녀에 대한 돌봄제공자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라는 기대에 의한 결과일 것이다(이운정·고선강, 2011; 정은희 외, 2012). 유럽에서도 자녀돌봄에 대한 가족규범(자녀돌봄에 대한 젠더적 규범)과 조부모의 손자녀에 대한 돌봄제공 및 기타자원의 지원이 젊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 결정이나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다(Del Boca, 2002; Eva & Zoe, 2012;

Jappens & Van Bavel, 2012).

한편 시부모나 친정부모와의 동거는 조부모의 생존과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출산을 설명하는 변수로 사용된다. 부모 중 특히 시아버지나 친정 아버지 즉 ‘부(父)’가 생존할 경우 이들과의 동거는 성인자녀로의 경제적 자원이전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에 출산에 정적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김현식·김지연, 2012; Del Boca, 2002).

조부모에 의한 자녀돌봄이나 지원이 실제 출산이나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 중 먼저 실제 출산으로의 이행에 조부모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김현식과 김지연(2012)의 연구를 보면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와 동거는 성인자녀의 첫 자녀출산 확률을 높여 첫 출산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를 “부모와의 동거, 특히 아버지들과의 동거는 성인자녀들에게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소득효과(income effect)에 의해 첫 출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한다(김현식·김지연, 2012: 10-12). 델 보카는 이탈리아에서의 출산연구에서 “자녀돌봄에 대한 잠재적 기대” 요소를 조부모의 생존이라고 간주하였고, 그의 실증결과 성인자녀의 부모생존이 출산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el Boca, 2002: 17). Jappens와 Van Bavel(2012)은 European Social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20-54세 유럽 여성들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부모와 성인자녀가 함께 동거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출산가능성이 높았고, 양부모가 생존해 있는 집단이 양부모가 모두 생존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출산가능성이 높았다. Mathews와 Sear(2013)는 영국에서 부모를 비롯한 친인척에 의한 자녀돌봄을 제공 받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두 번째 출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Hogan, Hao와 Parish(1990)은 미국에서

조부모에 의한 자녀돌봄이 백인들보다 흑인들에게 부모기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인임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출산계획에 대한 조부모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Eva와 Zoe(2012)는 독일에서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 돌봄가능성이 여성들의 출산의도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정혜은과 진미정(2008)은 ‘전국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 명의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들의 두 번째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생존여부는 미취업여성들에게 첫 출산 후 추가출산 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친정어머니의 생존은 취업여성들에게 두 번째 자녀출산 계획에 유의미하게 정적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은희와 최유석(2013)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둘째자녀 출산 및 출산계획에 대한 조부모 생존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의 생존이 출산계획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출산계획이 아닌 실제로 이행된 두 번째 출산에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의 생존이 두 번째 출산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연구는 출산계획과 실제 출산행동에 대한 조부모의 영향력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계획과 자녀를 실제로 낳는 출산행위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출산계획이 출산행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소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김정석, 2007: 98). 그러나 “출산계획은 실제 출산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출산행위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과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출산계획 분석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Mitchell & Gray, 2007을 김정석, 2007: 98에서 재인용).

Arnaud, Daniele와 Catriona(2011)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여성들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용가능한 보육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가족친화제도가 발달된 프랑스의 경우 비공식 자녀돌봄의 이용가능성을 보여주는 ‘성인자녀와 부모의 거주기간 거리’ 변수가 프랑스 여성들의 출산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들의 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정책과 보육기관이 발달되어 있지 못한 이탈리아의 경우 ‘성인자녀와 부모의 거주기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탈리아 여성들의 출산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지역사회에 이용가능한 보육기관이 부족한 남유럽의 이탈리아에서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돌봄의 이용가능성이 성인자녀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형민(2012)은 한국 기혼여성들이 주변으로부터 사회적 지원(가족, 친구 이웃 등)을 많이 받고 있다고 인지할수록 후속출산 계획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보고하였고, 안운숙과 이상호(2010)는 우리나라에서 부모들이 현재 자녀보육이나 제도 등에 대해 만족하는 부모일수록 출산에 대한 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현 자녀보육에 대한 요인이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을 제시하였다. 임현주, 이대균과 최향준(2011) 역시 친지의 사회적 지원이 ‘모’의 후속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을 검증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공하는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자료를 이용한 김정석(2007)의 연구에서는 친정어머니의 생존이 한 명의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추가 출산계획에 유의미하게 정적영향을 미쳤으나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아버지의 생존여부는 추가 출산계획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조부모의 존재나 동거 등이 출산으로의 이행이나 출산계획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

나 기존 선행연구들은 부모가 어떤 종류의 자원(가사노동 및 손자녀 돌봄 지원, 경제적 자원 등)을 성인자녀에게 이전하였을 때 성인자녀들의 출산 또는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조부모에 의한 비공식 자녀돌봄 및 지원이 기혼여성의 추가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이하 KLoWF) 1-3차 자료를 이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전국 일반가구 중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여성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추출된 9,068가구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여성 9,997명이 원표본으로 하여 2007년 1차년도, 2008년 2차년도, 2010년 3차년도 조사”가 이루어졌다.¹⁾ 조사자료는 가구자료, 여성개인용 자료, 직업력 자료 3가지 자료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성 개인용 자료와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대상은 합계출산율에 포함되는 15-49세 여성들 중 기존 자녀수가 1명 이상인 기혼여성들로 제한하여 1-3차 자료를 이용하여 불균형 패널(unbalanced panel) 자료를 구축하여 총 5,083명의 여성들(pid)의

9,494개의 관찰치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기혼여성의 사회경제학적 특성 및 가계특성이 기혼여성의 추가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부모에 의한 비공식 자녀돌봄 및 지원이 기혼 취업여성의 추가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가?

3. 변수

1) 종속변수

출산계획: 배우자가 있고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만49세 이하의 여성에게 질문한 자녀 출산계획에 관한 문항에서 각 조사년도(t_i)에 출산계획이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가변수화 하였다.

1) 인터넷 자료 <http://klowf.kwdi.re.kr/intro.do?method=goIntro> 검색일자 2014. 01. 03

2) 패널방정식의 기본모형은 $y_{it} = x_{it}\beta + u_{it}$ 와 같이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관찰된 개체 i 를 t 라는 기간 동안(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 1-3차 자료가 조사된 2007, 2008, 2010년) 반복 조사하였을 때 β 는 시간에 따라 변화되지 않는 변수(성별, 출생년도 등)와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변수(출산계획, 연령, 교육수준, 여성취업, 남편소득 등)를 통해 추정된다. 패널분석을 이용하면 특히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독립변수들의 값을 반영하여 추가 출산계획이 개체 i 의 시간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 수 있다(민인식 · 최필선, 2009).

2) 독립변수

(1) 여성의 사회경제학적 특성 변수³⁾

연령: 연속변수로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변수이다.

교육수준: 연속변수로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변수이다.

취업여부: 여성개인이 각 조사년도에 취업을 하였으면 1, 취업을 하지 않았으면 0으로 가변수화 하였다.

일-가정양립 갈등 1(일 → 가정): 각 조사년도에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5개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5개의 문항 내용은 ‘1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 ‘2 식구들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주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 ‘3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해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다’, ‘4 집안 일이 많아서 직장일을 할 때도 힘들 때가 많다’, ‘5 식구 중 환자가 생겨서 일을 그만둘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로 문항 1과 문항 2는 역코딩하여 5개 문항으로부터 산출된 값이 클수록 직장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부적영향이 큰 것으로 일-가정양립 갈등 변수값을 산출하였다.

일-가정양립 갈등 2(가정 → 일): 각 조사년도에 가정생활이 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6개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6개의 문항내용은 ‘1 일을 하는 것은 내게 삶의 보

람과 활력을 준다’, ‘2 일을 함으로써 식구들한테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일을 함으로써 가정생활도 더욱 만족스러워 진다’, ‘4 일을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5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6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로 문항 1, 2, 3, 4의 경우 역코딩하여 6개 문항으로부터 산출된 값이 클수록 가정생활이 직장일에 미치는 부적영향이 큰 것으로 일-가정양립 갈등 변수값을 산출하였다.

(2) 가계특성 변수

남편소득: 각 조사년도에 관찰된 남편 월소득을 월 450만원 이상을 준거변수로 하여 월 150만원미만, 월 150-250만원미만, 월 250-350만원미만, 월 350-450만원미만의 범주로 나누었다.

기존자녀수: 각 조사년도에 존재하는 자녀수이다.

거주지역: 각 조사년도에 거주하는 지역이 대도시이면 1, 중소도시이면 0으로 가변수화 하였다.

(3) 조부모에 의한 비공식 자녀돌봄 및 지원 변수

부모의 생존여부: 가사노동의 조력자이자 손자녀돌봄 역할을 담당하게 될 성인여성의 시어머니 또는 친정어머니가 각 조사년도에 생존해 계시면 1, 생존해 계시지 않으면 0으로 가변수화하였다.

3) 여성의 사회경제학적 변수에서 여성소득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여성가족패널 직업력 자료에서 여성들의 소득 결측치가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결측치가 존재하는 개체의 경우 출산계획 추정모형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이 결측치들이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여성소득 변수를 출산계획 추정모형에서 제외하였다.

(표 1) 변수정의

변수	구분		정의
중속 변수	출산계획	추가출산 계획	계획 유=1, 계획 무=0
		여성의 사회경제학적 특성	연령
교육수준	연속변수		
취업여부	취업=1, 미취업=0		
일-가정양립 갈등 1 (일 → 가정)	연속변수: 값이 클수록 직장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이 큼		
일-가정양립 갈등 2 (가정 → 일)	연속변수: 값이 클수록 가정생활이 직장일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이 큼		
일자리 종류	임금노동 종사=1, 자영업 종사=0		
독립 변수	가계특성	남편소득	월150만원미만=1, 그 외=0
			월150만원-250만원미만=1, 그 외=0
			월250만원-350만원미만=1, 그 외=0
			월350만원-450만원미만=1, 그 외=0
		기존자녀수	2명=1, 그 외=0
거주지역	3명이상=1, 그 외=0		
조부모에 의한 비공식 자녀돌봄 및 지원	조부모에 의한 비공식 자녀돌봄 및 지원	대도시=1, 중소도시=0	
		시어머니 생존여부	생존=1, 비생존=0
		친정어머니 생존여부	생존=1, 비생존=0
		시부모와 동거여부	동거=1, 비동거=0
		친정부모와 동거여부	동거=1, 비동거=0
		시부모에 의한 미취학 자녀돌봄여부	돌봄=1, 비돌봄=0
		친정부모에 의한 미취학 자녀돌봄여부	돌봄=1, 비돌봄=0
		시부모의 가사노동 조력여부	조력=1, 비조력=0
친정부모의 가사노동 조력여부	조력=1, 비조력=0		

부모와의 동거여부: 성인여성이 시부모 또는 친정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항에서 각 조사년도에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라고 응답한 경우 1, ‘남편의 다른 형제 자매와 함께 살고 계신다’와 ‘둘 다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 0으로 가변수화하였다.

비공식 자녀돌봄 여부: 6세 이하의 손자녀를 시아버지 혹은 시어머니/친정아버지 혹은 친정어머니가 일주일예 한 시간 이상 돌보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각 조사년도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 1,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0으로 가변수화하였다.

가사노동 조력여부: 현재 집안일(가사노동)을 도와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각 조사년도에 성인여성의 시부모에 의한 조력하면 1, 아니면 0으로 처리하였다. 마찬가지로 각 조사년도에 성인여성의 친정부모에 의한 가사노동 조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1, 아니면 0으로 가변수화하였다.

합동모형에서 얻은 추정량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민인식·최필선, 2009).

4. 분석방법

여성가족패널조사 1-3차 자료를 병합(merge)하여 구축된 불균형 패널자료를 합동모형(Pooled logit model)과 확률효과 모형(Random-effects model: RE)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출산계획은 이항변수(binary variable)로 본 연구의 패널 이항종속모형은 (3.1)과 같다.

자료분석은 구축된 자료가 패널자료임을 가정하지 않고 합동모형을 통해 추정하기도 하지만, 추정에 있어 효율성과 일치추정량을 얻기 위해 오차항에서 패널의 개체 특성(heterogeneity)을 고려한 모형인 확률효과 모형을 통해 추정할 경우

$$y_{it} = \begin{cases} 1, & y^*_{it} > 0 \text{인 경우} \\ 0, & y^*_{it} \leq 0 \text{인 경우} \end{cases} \quad (3.1)$$

$$i = 1, 2, 3, \dots, t = 1, 2, 3, \dots$$

관찰된 개체 i 는 t 기간 동안 반복 조사하였을 때 출산계획이 있으면 $y_{it} = 1$, 출산계획이 없으면 $y_{it} = 0$ 이 된다.

모형분석을 위해 Stata/SE 10.1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표 2>는 5,083명의 여성들(pid) 불균형패널 자료 9,494개의 관찰치에 대한 요약통계량이다.

(표 2) 요약통계량

변수	구분		Freq.(Percent) Mean(Std. Dev.)
출산계획	추가출산 계획	계획 유=1	767(8.08)
		계획 무=0	8,727(91.92)
		합계	9,494(100.00)
여성의 사회경제학적 특성	연령	연속변수	38.484(5.634)
	교육수준	연속변수	13.186(2.351)
	취업여부	취업=1	4,190(44.13)
		미취업=0	5,304(55.87)
		합계	9,494(100.00)
	일-가정양립 갈등 1 (일 → 가정)	연속변수	1.924(0.439)
	일-가정양립 갈등 2 (가정 → 일)	연속변수	2.071(0.475)
일자리 종류	임금노동	2,660(70.65)	
	자영업	1,105(29.35)	
	합계	3,765(100.00)	
가계특성	남편소득	월150만원미만	2,576(27.13)
		월150만원-250만원미만	2,764(29.11)
		월250만원-350만원미만	2,184(23.00)

변수	구분	Freq.(Percent) Mean(Std. Dev.)		
	기존자녀수	월350만원-450만원미만	997(10.50)	
		월450만원이상	973(10.25)	
		합계	9,494(100.00)	
	거주지역	1명	1,684(17.74)	
		2명	6,153(64.81)	
		3명이상	1,499(15.79)	
		합계	9,494(100.00)	
		대도시	5,194(54.71)	
		중소도시	4,300(45.29)	
		합계	9,494(100.00)	
		시어머니 생존여부	생존	8,084(85.15)
			비생존	1,410(14.85)
합계	9,494(100.00)			
친정어머니 생존여부	생존	7,367(77.60)		
	비생존	2,127(22.40)		
	합계	9,494(100.00)		
시부모와 동거여부	동거	655(8.52)		
	비동거	7,031(91.48)		
	합계	7,686(100.00)		
친정부모와 동거여부	동거	184(2.18)		
	비동거	8,261(97.82)		
	합계	8,445(100.00)		
시부모에 의한 미취학 자녀돌봄여부	돌봄	310(8.74)		
	비돌봄	3,238(91.26)		
	합계	3,548(100.00)		
친정부모에 의한 미취학 자녀돌봄여부	돌봄	281(7.67)		
	비돌봄	3,383(92.33)		
	합계	3,664(100.00)		
시부모의 가사노동 조력여부	조력	436(10.75)		
	비조력	3,620(89.2)		
	합계	4,056(100.00)		
친정부모의 가사노동 조력여부	조력	630(15.53)		
	비조력	3,426(84.47)		
	합계	4,056(100.00)		

IV. 연구결과

1. 기혼여성의 추가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의 사회경제학적 특성 및 가계 특성 변인 분석

기혼여성의 추가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 기혼여성들의 추가출산 계획은 여성연령², 여성 교육수준, 기존자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여성들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추가출산 계획의 확률도 증가하다가 점차 추가출산 계획의 가능성이 낮아진다. 교육수준의 경우 기혼여성들의 교육수준이 한 단위 증가될수록 추가출산 계획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출산을 하게 될 때 잃게 되는 인적자본 손실로 출산의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여성 교육수준이 출산계획에 부적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Becker et al. 1994). 이미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경우 그들이 고학력자일수록 추가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본 연구결과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이 추가 출산 계획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연구들에서는 여성들의 높은 교육수준이 출산 또는 출산계획에 부적영향을 준다고 보고하는 연구들(강유진, 2007; Kim, 2005; Kim, 2013; Jappens & Van Bavel, 2012; Rønsen, 2004)과 여성 교육수준의 출산 또는 출산계획에 대한 정적효과를 보고하는 연구들(이형민, 2012; 차승은, 2008; Mathews & Sear, 2013; Arnaud, Daniele & Catriona, 2011)이 함께 발견된다.

여성들의 높은 교육수준이 출산계획에 정적영

향을 미치는 것은 높은 교육수준의 부모들이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들에 비해 부모역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자녀에 대한 가치를 높게 지각하기 때문에 자녀를 비용보다는 보상(편익)으로 간주하는 성향이 높은 것”에 기인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차승은, 2008: 121). 우리나라의 경우 고학력 여성들의 취업률⁴이 OECD 국가의 고학력 여성들의 취업률에 비해 낮은 편인데 고학력 여성들이 취업을 많이 하지 않아 출산에 의한 비용(기회비용이나 직접비용)보다 자녀에 의한 보상(편익)을 크게 인식한 결과라 생각할 수 있다. 또는 고학력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좋은 직장에 근무하게 되고 이러한 일자리에서 제공되는 가족친화제도 등에 의해 여성들의 추가 출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가족친화제도의 출산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한 실증연구들에서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휴가제도나 보육비지원 등이 출산에 정적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Duvander, Lappegård, & Andersson, 2010; Hyatt & Milne, 1991; Rønsen, 2004).

한편 남편소득은 추가 출산계획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커는 가계소득 증가와 자녀수 감소 관계를 ‘자녀 질(quality)’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였는데 그는 “가계소득 증가는 자녀의 양과 질을 모두 증가시키나 양의 탄력성은 질의 탄력성과 비교할 때 작기 때문에 가계소득 증가는 부부의 자녀수요를 감소시키게 된다”고 설명하였다(Becker, 1993: 145-151). 이 이론에 의거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합계출산율이 1.19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1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이미 1명의 자녀를 출산한 부부들은 기존 자녀의 질에 대한 투자로 인해 자녀수요를 감소시키게 되어 추가 출산계획이 남편소득 수준에 따른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

4) OECD(2012) 통계에 의하면 대학이상의 고학력 여성들(35-44세)의 취업률이 한국의 경우 68%를 보이는 반면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의 경우 고학력 여성들의 취업률은 각 77%, 78%, 80%로 나타난다.

〈표 3〉 기혼여성의 추가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구분	Pooled		Random Effects		
		Coef.	Std. Err.	Coef.	Std. Err.	
constant		-0.375	2.399	5.376	3.787	
여성의 사회 경제학적 특성	여성연령	0.198	0.145	-0.015	0.224	
	여성연령 ²	-0.007**	0.002	-0.006+	0.003	
	여성 교육수준	0.086**	0.026	0.116*	0.046	
가계 특성	여성 취업여부	취업(ref. 미취업)	-0.066	0.107	-0.142	0.188
	남편소득	(ref. 월450만원이상)				
		월150만원미만	0.034	0.226	0.089	0.358
		월150만원-250만원미만	0.253	0.218	0.460	0.351
		월250만원-350만원미만	0.008	0.229	0.121	0.364
기존자녀수	(ref. 1명)					
	2명	-2.946***	0.110	-4.914***	0.346	
	3명이상	-3.834***	0.344	-6.356***	0.620	
거주지역	대도시(ref. 중소도시)	0.007	0.101	0.032	0.182	
Number of obs.		9494		9494		
Number of groups				5083		
LR chi2/Wald chi2		2558.51(11)***		234.33(11)***		
Log likelihood		-1392.8993		-1324.47		
Insig2u				1.744099 .1965295		
sigma_u				2.391807 .2350304		
rho				.6348896 .0455565		
Pseudo R ²		0.4787				

+ p<0.1, * p<0.05, ** p<0.01, *** p<0.001

은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자녀수의 경우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1명의 자녀만이 존재하는 여성들에 비해 기존자녀수가 2명 또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추가출산 가능성이 낮았다.

2. 기혼여성의 추가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조부모의 비공식 자녀돌봄 및 지원 변인 분석

조부모에 의한 비공식 자녀돌봄 및 지원이 기혼여성의 추가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조부모에 의한 비공식 자녀돌봄 및 지원이 기혼여성의 추가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

변수	구분	Pooled		Random Effects		
		Coef.	Std. Err.	Coef.	Std. Err.	
constant		3.919	5.547	6.162	6.746	
여성의 사회경제학적 특성	여성연령	-0.251	0.336	-0.394	0.409	
	여성연령 ²	0.001	0.005	0.003	0.006	
	여성 교육수준	0.141*	0.055	0.170*	0.072	
	여성 취업여부	-0.061	0.237	-0.123	0.294	
가계특성	남편소득					
		(ref. 월450만원이상)				
		월150만원미만	0.583	0.579	0.680	0.70
		월150만원-250만원미만	0.453	0.576	0.528	0.698
		월250만원-350만원미만	0.372	0.582	0.415	0.702
		월350만원-450만원미만	0.586	0.634	0.728	0.767
	기존자녀수	(ref. 1명)				
		2명	-2.777***	0.235	-3.390***	0.591
	3명이상	-3.610***	0.606	-4.321***	0.911	
거주지역	대도시	-0.135	0.225	-0.119	0.276	
	(ref. 중소도시)					
조부모에 의한 비공식 자녀돌봄 및 지원	시어머니 생존여부	생존(ref. 비생존)	0.757	0.684	0.997	0.850
	친정어머니 생존여부	생존(ref. 비생존)	0.133	0.634	0.143	0.756
	시부모와 동거여부	동거(ref. 비동거)	-0.053	0.435	-0.021	0.528
	친정부모와 동거여부	동거(ref. 비동거)	-1.610*	0.725	-2.042*	0.951
	시부모님 미취학 자녀돌봄여부	돌봄(ref. 비돌봄)	0.620	0.389	0.715	0.484
	친정부모에 의한 미취학 자녀돌봄여부	돌봄(ref. 비돌봄)	0.439	0.345	0.558	0.430
	시부모의 가사노동 조력여부	조력(ref. 비조력)	-0.655	0.611	-0.670	0.746
	친정부모의 가사노동 조력여부	조력(ref. 비조력)	-0.858	0.527	-0.933	0.648
Number of obs.		1308		1308		
Number of groups				1192		
LR chi2/Wald chi2		353.75(19)***		39.44(19)**		
Log likelihood		-295.11748		-293.79476		
lnsig2u				.5111927		
sigma_u				1.291231		
rho				3363384		
Pseudo R ²		0.3747				

* p<0.05, ** p<0.01, *** p<0.001

분석결과 기혼여성의 추가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성 교육수준, 기존자녀수,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추가 출산계획의 가능성이 높았다. 기존자녀수가 2명인 여성들은 자녀수가 1명인 여성들에 비해 추가 출산계획을 할 가능성이 낮았고, 기존자녀수가 3명 이상인 여성들 역시 기존자녀수가 1명인 여성들에 비해 추가 출산계획을 할 확률이 낮았다.

조부모에 의한 비공식 자녀돌봄 및 지원과 관련된 변수 중 기혼여성들의 추가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친정부모와 동거하는 집단은 친정부모와 비동거하는 집단에 비해 추가출산 가능성이 낮았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부계중심으로 가계가 계승되고, 가족구조나 규범, 거주규칙 등이 부계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성인자녀의 친정부모와의 동거는 시부모와의 동거에 비해 드문 일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정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취업여성들의 자녀돌봄 문제해결을 위한 것 등이 친정부모와의 동거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친정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동거를 하게 된다면 이는 추가출산 계획에 부적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취업여성 집단이 자녀돌봄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친정부모와 동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자’들이 다수 포함된 친정부모와의 동거집단이 친정부모와 비동거하는 집단에 비해 여성의 ‘취업’에 의한 효과로 인해 추가출산 가능성에 부적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⁵⁾

3. 기혼 취업여성의 추가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조부모의 비공식 자녀돌봄 및 지원 변인 분석

여성취업자 모형으로 기혼 취업여성의 추가출산 계획에 대한 조부모의 비공식 자녀돌봄 및 지원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취업여성들의 추가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존자녀수, 시어머니 생존여부, 시부모와 동거여부, 친정부모의 미취학자녀 돌봄 여부, 일-가정양립 갈등 2(가정 → 일)로 나타났다.

기존자녀수 변수를 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이미 자녀를 2명 출산한 여성들은 자녀를 1명만 출산한 여성들에 비해 추가 출산계획을 할 가능성이 낮았고, 이미 자녀수를 3명 이상 출산한 여성들 역시 자녀를 1명을 출산한 여성들에 비해 추가 출산계획을 할 확률이 낮았다.

부모의 성인자녀로의 자원이전 변수의 중 시어머니의 생존여부가 취업여성들의 추가출산 가능성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취업자들 중 시어머니가 생존한 집단의 경우 시어머니가 비생존한 집단보다 추가출산 계획의 가능성이 높았다. 시부모와 동거 역시 취업여성들의 추가출산 계획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시부모와 동거하는 집단은 비동거 집단보다 추가출산 계획의 확률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부모의 소득에 의한 소득효과라 생각된다(김현식·김지연, 2012; Del Boca, 2002).

취업여성들이 추가 출산계획을 결정할 때 친정부모의 자녀돌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친정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집단이 친정부모에 의한 자녀돌봄

5)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서 친정부모와 동거여부에 응답한 총 8,445개의 관찰치 중 친정부모와 동거하는 사례수는 184개로 이 중 여성취업자들이 친정부모와 동거하는 사례수는 125개였고, 여성미취업자들의 경우 친정부모와 동거한다고 응답한 사례수는 59개였다. 따라서 본 자료에 의거하면 성인자녀의 친정부모와의 동거는 취업에 의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5〉 조부모에 의한 비공식 자녀돌봄 및 지원이
기혼 취업여성의 추가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

변수	구분	Pooled		Random Effects		
		Coef.	Std. Err.	Coef.	Std. Err.	
constant		12.719	13.995	13.359	13.936	
여성의 사회 경제학적 특성	여성연령	-.539	.861	-.539	.861	
	여성연령 ²	.003	.013	.003	.013	
	여성 교육수준	.182	.118	.182	.118	
	일-가정양립 갈등 1	일 → 가정	-.564	.618	-.564	.618
	일-가정양립 갈등 2	가정 → 일	-1.314*	.621	-1.314*	.621
	임금노동 여부	임금노동(ref. 자영업) (ref. 월450만원이상) 월150만원미만	-.420	.548	-.420	.548
가계 특성	남편소득					
		월150만원-250만원미만	-.538	.744	-1.177	1.024
		월250만원-350만원미만	-.530	.812	-1.169	1.070
		월350만원-450만원미만 (ref. 1명)	.639	1.133	-.639	1.133
기존자녀수		2명	-3.161***	.493	-3.162***	.493
		3명이상	-20.273	3862.541	-30.075	519072.4
	거주지역	대도시(ref. 중소도시)	-.053	.468	-.053	.468
조부모에 의한 비공식 자녀돌봄 및 지원	시어머니 생존여부	생존(ref. 비생존)	2.427+	1.298	2.427+	1.299
	친정어머니 생존여부	생존(ref. 비생존)	.544	1.603	.544	1.603
	시부모와 동거여부	동거(ref. 비동거)	1.363+	.820	1.363+	.820
	친정부모와 동거여부	동거(ref. 비동거)	-20.381	6074.065	-29.964	.732
	시부모에 의한 미취학 자녀돌봄여부	돌봄(ref. 비돌봄)	.662	.584	.662	.584
	친정부모에 의한 미취학 자녀돌봄여부	돌봄(ref. 비돌봄)	.914+	.537	.914+	.537
	시부모의 가사노동 조력여부	조력(ref. 비조력)	-.347	.961	-.347	.961
	친정부모의 가사노동 조력여부	조력(ref. 비조력)	-.144	.841	-.144	.841
	Number of obs.		428		428	
Number of groups				378		
LR chi2/Wald chi2		172.461(21)***		63.77(21)***		
Log likelihood		155.844		-77.922254		
Insig2u				-10.74763 33.74664		
sigma_u				.0046364 .0782315		
rho				6.53e-06 .0002205		
Pseudo R ²		.332				

+ p<0.1, * p<0.05, ** p<0.01, *** p<0.001

이 이루어지지 않는 집단에 비해 추가출산을 계획할 확률이 높았다.

취업여성들의 경우 자녀출산-취업(지속)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출산 후 자녀돌봄 문제해결이 출산 계획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기존자녀에 대한 돌봄을 이미 친정부모가 대신하고 있는 경우 취업여성들의 추가출산 계획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부족한 보육기관 등의 공식적 보육을 조부모들에 의한 비공식 자녀돌봄으로 대체할 때 취업여성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추가출산을 계획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친정부모 돌봄지원과 시부모 돌봄지원간 추가 출산계획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여부의 차이는 우리나라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친정어머니-딸 관계는 혈연에 의한 애정적 유대를 바탕으로 정서적으로 더 밀접하기 때문에 비교적 편하게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된다(김순기·유영주, 1994). 그러나 시어머니-며느리 관계에서는 시댁에 대한 며느리의 봉사가 요구되기 때문에 친정부모와 달리 아이를 맡기는 것이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김순기·유영주, 1994). 이러한 서로 다른 의미의 가족관계로 인해 친정부모 돌봄지원과 시부모 돌봄지원간 추가출산 계획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취업여성들에게 일-가정양립 갈등 2(가정 → 일)는 추가 출산계획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정생활이 직장일에 미치는 부적영향이 커질수록 추가출산 가능성이 낮아졌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을 통해 조부모에 의한 비공식 자녀돌

봄 및 지원이 기혼여성들의 추가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모가 어떤 종류의 자원(가사노동 및 손자녀 돌봄 지원, 경제적 자원 등)을 성인자녀에게 이전하여 성인자녀들의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성인자녀의 부모의 생존여부, 성인자녀의 부모와의 동거, 조부모에 의한 비공식 손자녀돌봄 및 가사노동 조력 등의 변수들을 연구모형에 투입하였다.

기혼여성의 사회경제학적 특성 및 가계특성이 기혼여성의 추가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취업자 모형으로 조부모에 의한 비공식 자녀돌봄 및 지원이 기혼 취업여성의 추가출산 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들의 추가출산 계획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여성개인의 사회경제학적 특성은 여성연령, 여성의 교육수준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추가출산 계획의 가능성도 증가하다가 점차 추가출산 계획의 가능성이 낮아졌다. 교육수준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기혼여성들의 추가출산 계획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혼여성들의 추가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특성은 기존자녀수로 나타났다. 기존자녀수가 2명인 여성들은 자녀수가 1명인 여성들에 비해 추가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이 낮았고, 기존자녀수가 3명이상인 여성들 역시 기존자녀수가 1명인 여성들에 비해 추가출산을 계획할 확률이 낮았다. 반면 소득효과로 인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는 남편소득의 경우 본 연구결과에서는 남편소득이 추가 출산계획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취업여성들의 추가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조부모의 자녀돌봄 및 지원변수는 시어머니 생존여부, 시부모와 동거여부, 친정부모의 미취학 자녀 돌봄여부였다.

시어머니의 생존은 취업여성들의 추가출산 가능성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시어머니가 생존해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추가출산 계획 가능성이 높았다. 시부모와의 동거 역시 취업여성들의 추가출산 계획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시부모와 동거하는 집단은 비동거 집단보다 추가출산 계획의 확률이 높아졌다. 친정부모와 관련된 변수의 경우 친정부모의 자녀돌봄이 취업여성들의 추가출산 계획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친정부모의 자녀돌봄은 추가출산 계획 가능성을 높였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여성들의 경우 자녀출산과 취업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출산 이후 자녀돌봄 문제해결이 추가출산 계획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에 의한 가사노동 조력여부는 여성들의 추가 출산계획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이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에 의해 가사일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지의 여부보다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자녀돌봄에 대한 이용가능’ 여부가 출산결정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넷째, 취업여성들에게 일-가정양립 갈등 2(가정 → 일)는 추가 출산계획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취업여성들이 가정에서 겪게 되는 갈등이나 부담이 직장으로 부정적 전이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을 때 취업여성들의 출산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자녀에 대한 돌봄을 이미 친정부모가 대신하고 있는 경우 취업여성들의 추가출산 계획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부족한 보육기관 등의 공식적 보육을 조부모들에 의한 비공식 자녀돌봄으로 대체할 때 취업여성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추가출산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육서비스가 수요자의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보육서비스를 대체하기 위해 2014년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 돌봄지원 수당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이 제도의 시행이 출산을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는 보이나 앞서 선행연구들 보고에서 제시한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양육스트레스, 삶의 질 저하 등)을 생각할 때 보육인프라를 확충시킬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보육인프라 구축 후에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의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발적 돌봄의사를 지닌 중고령층의 돌봄노동을 이용한 아이돌보미 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무엇보다 취업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영육아 보육기관의 양적, 질적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취업여성들에게 일-가정양립 갈등이 추가 출산계획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업여성들이 가정에서 겪게 되는 갈등이나 노인, 자녀에 대한 돌봄부담을 덜어 수 있도록 하는 직장에서의 출산전후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탄력근무제도, 부양가족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의 실질적 시행률을 높이기 위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내 조직문화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에 대한 가족책임을 사회가 분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권 자격을 완화하여 가정의 건강성을 높이고, 이러한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완화가 궁극적으로 가정의 자녀출산 기능을 한 차원 끌어 올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출산을 저하가 자녀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수요감소에 기인한다는 측면에서 소득계층에 따른 주출산기 가정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은 자명하다. 이와 함께 본 연구결과 남편소득 수준에 따른 기혼여

성의 추가출산 계획은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성인들이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의식 및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이나 자녀에 대한 가치관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현재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출산·양육기에 있는 여성들이 조부모가 수행하는 손자녀 돌봄 및 지원에 의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추가출산 가능성을 높이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되었다. 따라서 유휴 고령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구축과 함께 취업여성들이 손쉽게 영유아 보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보육인프라 구축 및 일-가정양립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가정, 기업,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의 협력과 지원이 출산을 고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1) 강유진(2007). 둘째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가치관 및 가족관계 요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4), 639-653.
- 2) 강유진(2011). 손자녀 돌봄과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 돌봄 상황, 양육지각, 자원의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4(1), 73-97.
- 3) 김순기·유영주(1994). 기혼여성의 시어머니 및 친정어미와의 상호지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209-219.
- 4) 김은정(2011). 영유아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 취업모 맞벌이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5) 김정석(2007). 기혼여성의 출산아수별 추가출산계획. 한국인구학, 30(2), 97-116.
- 6) 김현식·김지연(2012). 부모동거가 첫째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2(3), 5-32.
- 7) 민인식·최필선(2009).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서울 : 한국STATA학회.
- 8) 안운숙·이상호(2010). 공보육정책이 자녀출산 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63, 227-258.
- 9) 여성가족패널. <http://klowf.kwidi.re.kr/intro.do?method=goIntro>.
- 10) 이윤정·고선강(2011). 어머니와 성인 자녀간 자원이전: 경제적 자원과 돌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6), 137-151.
- 11) 이진숙·신지연·윤나리(2010). 가족정책론. 서울 : 학지사.
- 12) 이형민(2012). 후속출산계획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의 영아기 자녀를 둔 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3(1), 1-31.
- 13) 임현주·이대균·최향준(2011). 친지의 사회적 지원, 부모특성, 어머니 심리적 특성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변인탐색. 유아교육연구, 31(6), 167-189.
- 14) 정은희·최슬기·김미선·박은경·정은영(2012). 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15) 정은희·최유석(2013).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계획 및 출산과 관련된 요인. 보건사회연구, 33(1), 5-34.
- 16) 정혜은·진미정(2008).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 한국인구학, 31(1), 147-164.
- 17) 차승은(2008). 부모역할의 보상/비용과 둘째자녀 출산계획: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3, 111-134.
- 18) 최영·차승연(2013). 손자녀 돌봄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40(3), 183-206.

- 19) 통계청. 「출생통계」 각 년도.
- 20) 한영선(2013). 여성취업과 일·가정양립지원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21) 홍승아 · 류연규 · 김수정 · 정희정 · 이진숙 · Frédérique, L. · Jane, J. · Laura, D.D. · Soma, N(2008). 일가족양립정책의 국가별 심층사례 연구. 연구보고서 12-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2) Arnaud, R. L., A., Daniele, V. & Catriona, D.(2011). Fertility intentions and obstacles to their realization in France and Italy. *Population*, 66(2), 361-389.
- 23) Becker, G. S.(1993). A Treatise on the family. Harvard University Press.
- 24) Becker, G. S., Murphy, K. M. & Tamura, R.(1994).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in: XII. Human capital, fertility, and economic growth. 3rd 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23-350.
- 25) Bower, B. F. & Myers, B. J.(1999). Grandmothers providing care for grandchildren: Consequences of various levels of caregiving. *Family Relations*, 48(3), 303-311.
- 26) Burton, L. M.(1992). Black grandparents rearing children of drug-addicted parents: stressors, outcomes, and social service needs. *The Gerontologist*, 32(6), 744-751.
- 27) Del Boca, D.(2002). The effect of child care and part time opportunities on participation and fertility decisions in Italy. IZA Discussion, 427.
- 28) Duvander, A. Z., Lappegård T. & Andersson, G.(2010). Family policy and fertility: fathers' and mothers' use of parental leave and continued childbearing in Norway and Sweden.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0(1), 45-57.
- 29) Eva, G. M. & Zoe, K.(2012). With Strings Attached: Grandparent-provided child care, fertility, and female labour market outcomes. EUI Working Paper MWP, 2012, 29.
- 30) Hank, K. & Kreyenfeld, M.(2003). A Multilevel analysis of child care and women's fertility decisions in Western German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3), 584-596.
- 31) Hogan, D. P., Hao, L. & Parish, W. L.(1990). Race, kin networks, and assistance to mother-headed families. *Social Forces*, 68(3), 797-812.
- 32) Hyatt, D. E. & Milne, W. J.(1991) Can public policy affect fertility? *Canadian Public Policy*, 17(1), 77-85.
- 33) Jappens, M. & Van Bavel, J.(2012). Regional family norms and child care by grandparents in Europe. *Demographic Research*, 27, 85-120.
- 34) Kim, H. W.(2013). Fertility intentions and behavior in a lowest-low fertility country: Findings from Korea. XXVII IUSSP 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
- 35) Kim, J.(2005). Sex selection and fertility in a dynamic model of conception and abortion.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8(1), 41-67.
- 36) Mathews, P. & Sear, R.(2013). Family and fertility: Influence on the progression to a second birth in the British household panel study. *PLoS ONE*, 8(3), e56941.
- 37) OECD(2008). Informal child care arrangements. Family Database · OECD Paris.
- 38) OECD(2009). 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s. Family Database · OECD Paris.

- 39) OECD(2011). Fertility rates, 1970-2011. Family Database · OECD Paris.
- 40) OECD(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098732-en>.
- 41) OECD(2012). Gender pay gaps for full-time workers and earnings by educational attainment. Family Database · OECD Paris.
- 42) Rønsen, M.(2004). Fertility and public policies - Evidence from Norway and Finland. *Demographic Research*, 10(6), 143-170.

- 투 고 일 : 2014년 4월 1일
- 심 사 일 : 2014년 4월 7일
- 심사완료일 : 2014년 5월 14일